영등포구의회
제221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영등포구청장 제출】

2020. 5. 11.

行 政 委 員 會
專門委員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222호로 2020년 4월 20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0년 5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행정안전부로부터 산정된 국가시책사업 추진 및 행정수요에 따른 일반직 증원을 위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정원의 총수 개정(안 제2조)

○ ‘1,424’를 ‘1,473’으로 개정(증 49명)

○ 집행기관의 정원 : ‘1,397’을 ‘1,446’으로 개정(증 49명)

나. 정원의 직급별 정원표 개정(별표 3)

○ 총계 ‘1,424’를 ‘1,734’으로 개정(증 49명)

○ 일반직 계 ‘1,419’를 ‘1,468’로 개정(증 49명)

○ 일반직 6급 이하 ‘1,342’를 ‘1,391’로 개정(증 49명)

기관별 / 직급별		총 계	본청	구의회 사무국	보건소	동
총 계		1,473	1,473			
정무직		1	1			
일반직 계		1,468	1,468			
일반직	3급	1	1	-	-	-
	4급	9	7	1	1	-
	5급	65	33	2	12	18
	6급 이하	1,391	1,391			
	전문경력관	2	2			
별정직 계		4	4			
6급 상당 이하		4	4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나. 예산조치: 일반직 신규 임용 인건비(9급 3호봉 기준)

1) 소요예산액

(단위:천원)

합계	국비	시비	구비	비고
1,023,258	-	411,750	611,508	

2) 세부내역

○ 채용인원:49명(7급 3명, 8급 13명, 9급 33명)

(단위:천원)

구 분	금 액	산 출 근 거
합 계	1,023,258	
기본급(봉급)	517,985	7급, 8급, 9급 각 직급 3호봉 기준
직급보조비	42,810	월 직급보조비 (7급 155천원, 8·9급 145천원)
국민건강보험금	28,748	보수월액의 3.335% 부담
연금부담금 등	132,239	연금부담금, 장기요양보험료, 퇴직수당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
수 당	301,476	- 가족수당 : 18,287천원 - 시간외근무수당: 121,334천원 - 정액급식비 : 38,220천원 - 명절휴가비 : 103,597천원 - 연가보상비 : 19,798천원 - 기술업무수당 : 240천원

5.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 구성으로 조직의 운영 건전성을 제고하여 국가 시책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신규 행정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공무원 정원을 증원 하려는 것으로서,

○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조, 본문의 개정사항은 공무원의 총 정원수를 현재 1,424명에서 1,473명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이는 행정안전부에서 통보된 기준인건비 1,320억 원 내에서 49명을 증원하려는 것이며,

- 안 제4조 “별표3” 직급별 정원표에서는 안 제2조에서의 증원에 따른 직급별 정원을 개정하는 것으로서, 일반직 6급 이하 정원 49명을 증원하려는 것임.

○ **검토결과**,

효율적인 조직 관리를 통해 포용국가 아동정책 추진 및 위기청소년 및 초등돌봄 등 국가 시책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변화된 행정여건을 반영하고 다양한 행정수요에 신속히 대응하여 행정서비스의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신규 충원하는 것으로써,

2020년도 우리 구의 기준인건비 총액은 1,320억 원이고, 예산 편성액은 1,267억 원이며, 신규 증원되는 49명의 인건비는 연간 10억 2,325만 원으로, 개정안에 따른 인력증원 이후에도 구의 총 인건비는 기준인건비 내에서 운영될 것으로 예상됨.

(※ ‘2020년도 기준인건비 및 예산편성현황’ 참조)

【 붙 임 】

2020년도 기준인건비 및 예산편성 현황

□ 행정안전부 기준인건비 : 132,022,841천원

□ 영등포구 예산편성금액 : 126,780,739천원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총 계	**126,780,739**
101 인건비	**102,983,853**
101-01 보수	80,190,406
101-02 기타직보수	8,930,045
101-03 무기계약근로자보수	13,863,402
204 직무수행경비	**3,143,498**
204-02 직급보조비	3,143,498
303 포상금	**4,520,494**
303-02 성과상여금	4,520,494
304 연금부담금등	**16,132,894**
304-01 연금부담금	13,006,807
304-02 국민건강보험금	3,126,087

참 고 자 료

1 지방자치법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기준인건비제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구와 정원을 기준인건비를 기준으로 자율성과 책임성이 조화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수요, 인건비 등을 고려하여 매년 기준인건비를 산정하고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기준인건비에 추가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인건비의 범위(이하 "자율범위"라 한다)를 함께 통보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기준인건비의 구성요소, 산정방법 등 기준인건비의 산정과 자율범위의 규모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기준인건비 운영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기준인건비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2조(정원책정의 일반기준) ① 정원은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직급을 정하여 책정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2. 4. 10., 2013. 12. 4.>

1. 지방자치단체는 인구수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 등을 고려

하여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는 업무의 성질·난이도·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직급별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3. 1개의 직위에는 1개의 직급을 부여한다. 다만, 업무의 성질상 일반관리업무가 전체업무의 100분의 50을 넘는 직위는 동일계급 내에서 행정직과 다른 일반직의 복수의 직렬로 할 수 있으며, 업무의 성격이 특수하거나 1개의 직위에 2개 이상의 이질적인 업무가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4개의 직렬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복수의 직렬로 할 수 있다.

4. 1개의 직위에 대하여는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직을 부여할 수 없다. 다만,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서 일반직공무원을 갈음하여 별정직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한 직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1개의 직위에 일반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 일반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동안 그 직위에 상응하는 직급의 정원을 결원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6. 경제자유구역청이 법 제15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 설치된 경우에는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한정하여 정원을 책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도의 경우 : 본청, 의회사무처, 합의제행정기관,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경제자유구역청

2. 시·군·구의 경우 : 본청, 의회사무국·사무과, 합의제행정기관,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자치구가 아닌 구, 읍·면·동과 그 출장소

제29조(직급별 정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합리적인 직급체제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본청·소방학교와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이하 "지방전문경력관"이라 한다)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도의 5급 이하(시·군·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과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 7. 3., 2013. 12. 4.>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른 직위군별 정원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 12. 4.>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

⑤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겸임의 경우에는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6조(기구와 정원조례의 제안과 의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안을 해당 지방의회에 제안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구와 정원의 조정으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경비를 나타내야 한다.

영등포구의회
제221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타임스퀘어 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영등포구청장 제출】

2020. 5. 11.

行 政 委 員 會
專門委員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타임스퀘어 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197호로 2020년 2월 21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0년 5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구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 활동 등을 위한 타임스퀘어 광장의 운영·관리 및 허가·사용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타임스퀘어광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사용신청 허가·제한 및 통지(안 제4조~제6조)

라. 사용허가의 변경 및 취소·정지(안 제7조~제8조)

마. 사용료 징수 및 면제(안 제9조)

바. 이의신청 및 원상회복(안 제10조~제11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협의사항

1) 규제심사: 해당없음

2) 부패영향평가·성별영향분석평가·인권영향평가: 해당없음

라. 입법예고(2020. 1. 16. ~ 2. 5./ 20일간) 결과: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타임스퀘어 광장을 구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 활동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광장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 이용에 필요한 절차 등 제반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임.

○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조에는 용어의 “정의”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사용자가 배타적, 독점적으로 광장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용함으로써 광장을 자유롭게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이 있을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하겠음.

- 안 제3조에는 광장의 운영·관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위탁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한 것으로, 서울광장 등 타 자치단체의 광장 위탁 현황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선행해야 할 것임.

- 안 제5조에서는 광장 조성 목적에 위배되거나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사용이 제한되는 경우를 검토하여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공익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문화·예술 및 어린이·청소년, 여성 및 노인 관련 행사에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타임스퀘어 광장이 건전한 문화·예술 공간 위주로 활용되도록 하였음.

- 안 제7조 내지 안 제8조는 사용계획의 변경, 사용허가의 취소·정지에 대한 규정으로, 공익을 위해 광장 사용이 필요한 경우와 구민의 안전확보 및 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사용자와 사전 협의 후 허가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고 하였지만, 사용자가 선의의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이 점에 대한 보상책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하겠음.

- 안 제9조에서는 기본 사용료로 m^2당 1시간에 10원~20원을 징수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주관 행사에서 광장을 사용하는 경우와 공익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하도록 하였음.

- 안 제11조의 “원상회복 등”에서는 광장 사용 후 설치한 가설물의 제거나 청소 등의 조치를 규정하고 손상이 발생한 경우 손해에 대한 배상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는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련 법령을 준용하도록 하였음.

○ **검토결과**,

타임스퀘어 광장은 공공용 시설로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굳이 그 사용에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시설물을 관리하는 주체로써 광장을 유지 관리하기 위한 최소한의 경우에만 그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정하려는 것임.

본 조례안의 제정 목적은 구민의 소중한 재산인 타임스퀘어 광장이 건전한 여가 선용과 문화 활동 등을 위해 사용되도록 운영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그 사용에 대하여 일부 제한을 가하는 것으로, 평소에는 일반 주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등 상위 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므로 적법 타당한 조례 제정이라 사료됨.

참 고 자 료

1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가.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위치 및 구역의 조정

나. 조례·규칙의 제정·개정·폐지 및 그 운영·관리

다. 산하(傘下) 행정기관의 조직관리

라.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감독

마. 소속 공무원의 인사·후생복지 및 교육

바.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

사. 예산의 편성·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아.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

자. 공유재산관리(公有財産管理)

차. 가족관계등록 및 주민등록 관리

카.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

2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0조(사용·수익허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을 허가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다.

1. 허가의 목적·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사용·수익허가의 방법) ③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23. 제1호부터 제22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행정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성질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